

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

불법 · 식용불가 야생동물을 식료품으로 판매 금지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(2020. 1. 29. 환경부, 관세청)
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, 뱀, 너구리, 오소리, 사향고양이 등 수입 허가 제한 및 통관 보류

불법 포획 ·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,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취득 금지
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· 채취 · 가공 · 유통 · 보관 · 수입 · 반입 등 금지

➔ 위반 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, 제14조 위반 고발
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/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)

식용불가 야생동물

- 멸종위기 야생동물 : 반달가슴곰, 사향노루, 산양, 수달, 담비, 물개, 삵, 뚝부기, 큰기러기, 흑기러기, 구렁이
- 그외 : 고라니, 너구리, 노루, 멧돼지, 멧토끼, 오소리, 가창오리, 고방오리, 쇠기러기, 쇠오리, 청둥오리, 흰뺨검둥오리, 계곡산개구리, 북방산개구리, 한국산개구리, 까치살모사, 능구렁이, 살모사, 유혈목이, 자라

무신고(무표시) 수입식품 판매 금지

오염된 육류는 **아프리카돼지열병(ASF)**의 매우 위험한 감염원입니다.
ASF의 발생 차단을 위해 무신고 수입축산물의 불법 유통 · 판매 금지!!

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현품 포장지에 '한글표시사항(스티커 등)'이 없는 식품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납품업자를 통해 지방식약청의 '수입신고확인증'을 받아 두거나,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무신고 여부 확인

➔ 무신고 제품 판매 시 「식품위생법」 제4조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33조 위반 고발
(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식품 진열 · 판매 시 위생적 취급 및 유통기한 관리

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, 판매 시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으로
과태료(1차 30만 원/2차 60만 원/3차 90만 원) 부과 및 해당제품 압류폐기

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 취급 시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합니다.

➔ 부패 ·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 · 냉장시설에 보관 · 관리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으로
과태료(1차 30만 원/2차 60만 원/3차 90만 원) 부과